

서울특별시 음주운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

의안 번호	1951
----------	------

2020년 12월 17일
교통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자 : 우형찬 의원 외 11명

나.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0년 10월 16일

다. 회부일자 : 2020년 10월 26일

라. 상정일자

○ 제298회 정례회 제6차 교통위원회(2020년 12월 17일 상정 ·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우형찬 의원)

가. 제안이유

○ 최근 정부에서는 법령 개정을 통해 음주 운전자에 대한 처벌과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하는 등 음주운전을 방지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피해는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음

- 이에 음주운전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음주운전 피해자 등에 대한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음주운전 예방계획 수립 및 예방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5조)
- 음주운전 예방 및 운주운전 피해 회복에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로법교통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조)

다. 입법예고

- 기 간 : 2020. 10. 29. ~ 11. 5.
- 제출의견 : 없음

라. 관련부서 의견조회 결과 : 원안 동의

4.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장훈)

가. 개요

- 동 조례안은 음주운전을 사전에 예방하여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최소화 하고 음주운전 피해자 등에 대한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나. 검토 의견

■ 조례 제정의 필요성

- 최근 정부는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인명 피해를 낸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¹⁾한바 있음
- 음주운전 사고발생건수는 '15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15년도 24,399건에서 '19년도 15,708건으로 35.6%(8,691 건) 감소하였으나, 올해 발생한 “을왕리 음주운전 사고 청와대 국민청원”과 “횡단보도 음주운전사고 대만청년의 국민청원” 등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피해는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으며, 음주운전과 관련한 현행 법령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과 단속 기준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는 실정임

1) 음주운전 처벌강화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2018.12.18. 시행)
음주운전 기준강화 : 「도로교통법」 개정(2019.6.25. 시행)

- 이에 음주운전 피해예방을 위한 다양한 정책마련과 피해를 입은 시민과 가족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으로 사회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임

■ 조례 제정 목적, 정의 규정 신설(안 제1조~제2조 관련)

- 안 제1조(목적)와 제2조(정의)는 동 조례제정의 목적과 동 제정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는 것으로 “자동차”와 “자전거”를 「도로교통법」 상의 “자동차등”과 “자전거등”으로 각각 정의²⁾하고 “음주운전”의 정의를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와 자전거를 운전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음

-
- 2)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18. “자동차”란 철길이나 가설된 선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견인되는 자동차도 자동차의 일부로 본다)로서 다음 각 목의 차를 말한다.
-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다음의 자동차. 다만,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제외한다.
- 1) 승용자동차 2) 승합자동차 3) 화물자동차 4) 특수자동차 5) 이륜자동차
- 나.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19. “원동기장치자전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를 말한다.
-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시시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이륜자동차
- 나. 그 밖에 배기량 125시시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는 제외한다)
- 19의2. “개인형 이동장치”란 제19호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0. “자전거”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자전거 및 전기자전거를 말한다.
21. “자동차등”이란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한다.
- 21의2. “자전거등”이란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말한다.
- 이하 생략 -

- 그러나, 「도로교통법」 제44조에서 음주운전을 금지하는 대상을 “자동차등”과 “노면전차” 그리고 “자전거”로 규정³⁾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56조제11호⁴⁾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등”을 운전할 경우 벌금 등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 제정조례안의 “음주운전” 적용범위가 관련 법령보다 좁다고 볼 수 있으므로 관련법에 준하는 수준으로 적용범위를 확대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안 제2조제2항 “술에 취한 상태”를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규정하는 것은 음주운전 예방과 운주운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하는 「도로교통법」 제44조제4항 기준을 준용⁵⁾한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임

3)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③ 생략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4) 「도로교통법」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11.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등을 운전한 사람
12.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자전거등을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5) 「도로교통법」 제44조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2018.12.24.개정, 2019.6.25.시행)
※ 음주운전 기준강화 혈중알코올농도 0.05→0.03

■ 책무 규정 신설(안 제3조 관련)

- 안 제3조(책무)는 음주운전을 예방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고 교통 관련단체 등을 통해 음주운전 예방활동 장려 및 이에 필요한 지원과 음주운전 사고로 발생한 인명·재산의 피해회복 지원에 노력하도록 하는 등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음
- 동 사항은 지역특성을 고려한 음주사고 예방활동과 사고 피해지원에 관한 시장의 의무를 명시한 것으로 동 조례제정을 통해 음주운전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음주운전 예방계획, 예방활동 규정 신설(안 제4조~제5조 관련)

- 안 제4조는 음주운전 예방계획을 수립할 경우 관계 기관과 협의토록 하고 계획 수립시 운전자의 인식개선과 지역별, 수단별 특성 등에 따른 음주운전 예방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하는 것임
- 안 제5조는 안 제4조의 예방계획에 따라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각종 교육, 홍보 및 캠페인, 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의 연계협력 등 음주운전을 억제시키고 음주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 실시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임

- 안 제5조제5항은 자동차 또는 자전거를 유상으로 대여하는 경우 사업자가 음주 여부를 확인하거나 음주운전 예방을 위해 안내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지원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음주운전 예방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은 인정됨
- 다만, 동 사항은 사업자가 대여계약 체결시 대여표준약관 등에 근거하여 음주여부 확인과 음주운전 시 보험적용이 되지 않는 사항 등을 고지해야 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활동까지 지원하는 것은 자칫 무분별한 재정지원으로 예산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할 것임

■ 재정지원 등 규정 신설(안 제6조 관련)

- 안 제6조는 음주운전 예방 및 음주사고를 줄이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안 제5조에 따른 사업을 공익활동으로 수행하는 민간 단체에 대한 경비 지원과 음주운전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인명 및 재산의 피해를 회복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 동 조례안은 음주운전 예방활동을 적극 장려하고 음주운전 사고 피해자 지원을 통해 조속한 피해 회복 및 사회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제정 취지는 인정된다 할 것임

- 다만, 인명·재산의 피해 회복을 위한 대상범위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무분별한 예산 지원이 이뤄질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동 조례 시행시 이에 대해서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참고로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관련 시행규칙⁶⁾에 따라 질병, 사고 등 일시적인 위기상황이 발생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할 경우 등에 대해서는 소득·재산 기준 등을 고려하고 있으며, 갑작스러운 위기상황 등 지원이 긴급히 필요하여 동 주민센터 등을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사람 등을 한정하여 지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 조례 시행시 이러한 방안을 고려할 필요도 있을 것으로 판단됨

-
- 6)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생활안정지원의 대상) ① 시장은 시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금전 또는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호 ~ 3호 (생략)
4. 기타 지원이 긴급한 생활안정을 필요로 하는 자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사람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지원대상자) ①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제4호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1호 ~ 3호 (생략)
 4.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 대상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실직, 질병, 사고, 과다 채무 등 일시적인 위기상황이 발생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다만, 감염병 위기관리대책(「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하는 것을 말한다)에서 정한 위기경보 수준이 최고이거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1) ~ 3) (생략)

나.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지원이 필요하여 동 주민센터 또는 구청 사례관리회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사람

- 아울러, 동 제정조례안은 관련법에서의 위임이 없는 상황에서 음주운전의 예방과 음주운전 사고를 억제하기 위해 최소한의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는 근거와 관련활동 및 피해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서울시는 사업의 범위와 예산확보, 민간차원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방안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실효성을 확보도록 만전을 기해야할 것임

5.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음주운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주운전으로 초래되는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줄이기 위하여 시민에게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알리고 음주운전의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음주운전 사고시 피해를 회복하도록 지원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자동차”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21호에 따른 자동차등을 말한다.
- “자전거”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21호의2에 따른 자전거등을 말한다.
- “음주운전”이란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로 자동차나 자전거를 운전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음주운전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교통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음주운전 예방활동을 장려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음주운전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인명·재산의 피해를 회복하는데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이 자치구와 지역의 특성에 따라 수립·추진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음주운전 예방계획) ① 시장은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음주운전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민의 음주운전 위험 인식 증진에 관한 사항
2. 음주운전의 예방 및 운전자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
3. 자치구별·지역별 특성에 따른 음주운전 예방에 관한 사항
4. 자동차, 자전거 등 수단별 음주운전 예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음주운전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음주운전 예방활동) 시장은 음주운전 예방을 위하여 제4호의 예방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1. 음주운전 예방교육
2. 음주운전 예방 관련 홍보 및 캠페인
3. 서울지방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의 연계협력
4. 자치구별·지역별 특성에 따른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활동
5. 다음 각 목의 경우에 사업자가 음주 여부를 확인하거나 음주운전 예방을 위해 안내하도록 지원
 -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자로부터 자동차를 대여하는 경우
 - 나. 자전거를 유상으로 대여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자로부터 자전거를 대여할 경우(「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2조의2에 따른 공공자전거를 대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6. 그 밖에 음주운전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6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공익활동으로 수행하는

민간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경찰서 등 관계기관에서 음주운전 예방과 관련하여 협조를 요청

하는 경우에는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음주운전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인명·재산의

피해를 회복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표창) 시장은 음주운전 예방활동 실적이 우수하고 공이 큰 단체나 사

람에게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